

국가교육위원회 제65차 회의

의안번호	제2026-06호	심의 · 의결 사항
의결일자	2026. 2. 12.	
공개여부	공개	

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 및 「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 확정[안]

제 출 자	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
제출일자	2026. 2. 12.

I.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(안)

□ 참여위원장 관련 주요사항

- (선정) 국교위원회 위원 중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국교위원회 위원장이 지명(국가교육위원회법 제16조 ④)
- (임기) 2년, 1회 연임 가능 (법 시행령 제17조 ③)
- (역할)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국민참여위원회 회의를 소집(법 시행령 제17조 ④)
 - 참여위원장은 대면·비대면·서면회의, 지역별·직능별 회의 등 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방식을 결정(고시 제8조 ③·④)
 - 위원회 개최 또는 의견수렴 시, 참여위원장은 개최계획을 사전에 국교위에 보고하고 활동 결과를 국교위에 보고(고시 제8조 ⑤)
 - 참여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선정과 해촉 관련 사항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(당연직) 역할 수행(고시 제6조 ③)

□ 제2기 참여위원장 지명안

- 지명안 : 이광호 상임위원
- 지명이유
 -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국민참여위원회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, 원활한 사무처 소통 및 본위원회 보고 가능
 - 폭넓은 현장·학계·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제2기 국민참여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,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참여위원들을 원활히 총괄·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II. 「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 확정안

□ 그간 경과

- 국민참여위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: '26.1.20~2.9(20일간)
- 국민참여위 고시 개정(안)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전문위 검토 : '26.1.22

□ 행정예고 결과 : 수정의견 1건(경북대)

- (제안내용) 고등직업교육(전문대학) 관련자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절차 관련 고시 조항 수정 필요
 - 지방정부가 위원 추천 시 학교급별(초·중·고·전문대·대학)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거나, 결원 충원시 세부 직능(직업 교육 전문가)별 쿼터를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 제안
- (검토의견) 기반영
 - 모집인원의 60% 이상을 선발하는 공개모집의 경우 지원단계에서 각 직능(학생·청년, 학부모, 교육관계자, 일반국민)에 대한 세부분류를 선택하도록 하고, 선정 과정에서 세부직능별 균형을 고려하고 있음

< 직능 세부 분류 >

대분류	중분류	소분류
교육 관계자	→ 유초중등 교원	→ 유 / 초 / 중 / 고
	→ 대학 교원	
	→ 교육기관·교육행정기관·교육연구기관 등 종사자(교원 제외)	→ 대학 / 전문대학
	→ 시민단체	
	→ 기타	
학생· 청년 (16~34세)	→ 고교생	→ 일반/직업
	→ 대학생	
	→ 대학원생	
	→ 청소년·청년	
학부모	→ 영유아 자녀(6세미만)	→ 대학/전문대학
	→ 초등학생 자녀	
	→ 중·고교생 자녀	
	→ 대학생 자녀	
일반 국민		

□ **의견수렴 전문위 논의 결과 : 수정의견 1건**

- (제안내용)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 활동 시 국민참여위원 외의 자를 포함하여 의견수렴할 수 있도록 고시안 마련 필요
- (검토의견) 폭넓은 의견수렴 등 원활한 국민참여위 운영 위해 반영 타당

□ **개정 확정안(안)**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운영) ① ~ ③ (생략)	제8조(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장은 지역별, 직능별 등으로 나누어 회의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	④ 위원장은 지역별, 직능별 등으로 나누거나 필요시 위원 외의 자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⑤ ~ ⑥ (생략)	⑤ ~ ⑥ (현행과 같음)

Ⅲ. 향후 일정(안)

- 국민참여위원회 고시 개정 확정(안) 시행 : '26.2.13.(금)
-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착수 : '26.2.19.(목)
 - 연임 위원 : 2.19.(목) ~ 3.4.(수)
 - 공개모집 및 지방정부 추천 : 2.23.(월)~3.15.(일)
-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심사 및 최종 구성 : ~'26.4월
-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: ~'26.5월

현행	개정안
제4조(모집) ① ~ ④ (생략) ⑤ 위원 선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각 호의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. 1. 추천 2. 심사위원회 심사 ⑥ (생략)	제4조(모집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위원 선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각 호의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. 1. 추천 2. 심사위원회 심사 3. 연임 ⑥ (현행과 같음)
제5조(추천) ① ~ ② (생략)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·도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인원 수의 2배를 추천하되, 지역·연령·성별·직능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추천하여야 한다.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자 중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.	제5조(추천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(삭제) ④ (삭제)
제8조(운영) ① ~ ③ (생략) ④ 위원장은 지역별, 직능별 등으로 나누어 회의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 ⑤ ~ ⑥ (생략)	제8조(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위원장은 지역별, 직능별 등으로 나누거나 필요시 위원 외의 자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 ⑤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위원의 해촉) ① ~ ③ (생략) ④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필요시 제4조 또는 제5조의 방법으로 충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10조(위원의 해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기존 신청 인원 중에서 충원하거나 필요시 ----- -----.